

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장애예술인지원법)

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8987호, 2022. 9. 27., 일부개정]

문화체육관광부 (장애인문화예술과) 044-203-2773

제9조의2(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9. 27.]

부칙 <제18987호, 2022. 9. 27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